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호관찰소의 출입 관리 강화〉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995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병 섭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보호관찰소의 출입 관리에 필요한 보안장비 설치 의무	2
2.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출입자 검색 권한 부여	9
※ 참고.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소 지소 현황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17.
3. 회 부 일 : 2025. 3.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보호관찰소 출입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역의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자가 인화물질을 이용한 방화를 일으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에 보안검색대 등 청사 출입 관리에 관한 노력을 하도록 명문화 함으로써 보호관찰소의 출입 등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III. 검토의견

1. 보호관찰소의 출입 관리에 필요한 보안장비 설치 의무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에게 보호관찰소의 방호 및 보호관찰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안검색대 등의 보안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① · ② (생략) <신설>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의 방호 및 보호관찰활동과 갇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안검색대 등 출입관리에 필요한 보안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u>

○ 최근 보호관찰지소에 면담을 신청해 보호관찰지소를 방문한 보호관찰 대상자¹⁾가 보호관찰지소에 방화를 일으켜 보호관찰지소의 직원들을 포함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일어난 바 있음²⁾.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2) 이종익, ‘보호관찰대상자 분신 시도, 천안준법지원센터 화재 17명 중경상’, 서울신문, 2024. 8. 30.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4/08/30/20240830500137>)

○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갇혀보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두고 있으며, 보호관찰소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에 보호관찰지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³⁾, 2025년 현재 18개의 보호관찰소와 40개의 보호관찰지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⁴⁾.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피의자, 소년 보호처분 대상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판결·결정 전 조사⁵⁾, 보호관찰 개시에 따른 신고⁶⁾, 거주이전에 따른 신고⁷⁾,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갇혀보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둔다.

② 보호관찰소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에 보호관찰지소를 둘 수 있다.

4) [참고자료]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지소 현황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所在地)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결정 전 조사) ① 법원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 또는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대상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소년법」 제49조의2(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이하 “보호관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장등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보

보호관찰관의 대면 지도 및 감독⁸⁾,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의 집행⁹⁾ 및 면담¹⁰⁾ 등을 위해 보호관찰소로 소환되거나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23년 대면지도를 위해 보호관찰소 등에 출석한 대상자의 수는 338,689명에 이르고 있으나,

<보호관찰 지도감독 유형>

연도	대면지도		비대면지도	총계
	출석	출장		
2021	339,098	260,770	519,011	1,118,879
2022	354,185	270,513	466,425	1,091,123

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보호관찰관·분류심사관 등에게 피의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①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생활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대상자(이하 “보호관찰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주거이전등의 신고) ② 보호관찰대상자가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안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주거이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지도·감독) ①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한다.
 ② 제1항의 지도·감독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관찰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
 2.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3.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①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10) ‘보호관찰관과 대상자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독립된 면담 공간 확보로 면담 분위기를 조성하고 면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서부, 서산 등 총 2개 기관에서 독립면담실 9실을 추가 설치하여 2023. 12. 기준 전국 49개 기관에서 총 266실의 독립면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법무연감 2024, p. 339.

연도	대면지도		비대면지도	총계
	출석	출장		
2023	338,689	330,612	425,110	1,094,411

자료 :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2024, p.85.

대다수의 보호관찰소는 출입통제 게이트, X-ray 탐지기 등 보안 검색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신원 확인과 소지품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호관찰소에 출입하여 직원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임.

○ 개정안은 법률에 직접 법무부장관이 보호관찰소에 보안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으로부터 보호관찰관 등 보호관찰소의 직원, 출석자 및 일반인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보호관찰 관련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다만, 보호관찰소¹¹⁾는 법무부의 소속기관으로 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지소는 모두 「정부청사 관리 규정」에 따른 ‘청사’에 해당¹²⁾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청사 관리 규정」은 청사관리기관의

1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②법무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교정청,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두며, 지방교정청장소속하에 교도소 및 구치소를 둔다.

12)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청사에 적용한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장¹³⁾이 청사관리에 필요한 출입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¹⁴⁾를 두고 있음.¹⁵⁾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이 「정부청사 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지침 등 행정규칙을 통해 청사 출입절차를 정하고 있는 현재의 법체계를 고려할 때 법무부(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의 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와,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외국인 보호소 등 청사 출입자에 의해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법무부의 다른 소속 기관¹⁶⁾과 비교하여 보호관찰소만 법률로 출입관리를 위한 보안장비

13)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②국유의 청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1. 합동청사, 청사의 합동화를 위하여 필요한 청사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청사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2. 제1호 외의 청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배정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③임차청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얻은 임차청사, 지방행정기관,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임차청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사관리기관(이하 “청사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청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설관리 및 방호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14)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청사의 출입관리) ①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출입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청사출입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차량 등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그 밖에 청사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5) 이에 따라, 형사사건 관계인들의 출입이 빈번한 검찰청 청사에 대하여 대검찰청은 「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출입 및 방호 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다른 정부기관들에서도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등과 같은 행정규칙을 통해 보안장비 설치 등 출입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16)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에는 보안검색장비 설치 및 출입자 검색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음.

설치 의무 규정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체계자구적 검토사항으로, 개정안이 위치한 현행법 제14조는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지소의 설치근거에 관한 조항으로 개정안을 입법화 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출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안을 제14조제3항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보호관찰소의 명칭, 관할구역, 조직 및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제17조¹⁷⁾에 개정안의 내용을 별도의 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적으로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해 관련기관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법무부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전자감독·보호관찰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협, 폭행 등 위험 상황에 노출이 잦아 적절한 개선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소에 보안검색대 등 보안장비 설치를 통해 출입자에 대하여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안전을 지키고 청사 방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다만, 교도소 및 구치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제3항은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보호관찰소의 명칭 등) 보호관찰소의 명칭, 관할 구역, 조직 및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보안장비는 설치하는 법무부 예산행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되어 법률에서 설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 법무부 관할 교정시설의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보안장비 설치 의무 부과 없이 출입검사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법률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보안장비의 구체적인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임.

2.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출입자 검색 권한 부여

개정안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소에 출입하는 사람이 흥기나 그 밖에 위험한 물건 등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현 행	개정안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① · ② (생 략) <신 설>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흥기나 그 밖 의 위험한 물건 또는 보호관찰소 내 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을 지 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 자를 검색할 수 있다.

- 「헌법」 제12조¹⁸⁾의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에 따라, 「국회법¹⁹⁾」, 「법원조직법²⁰⁾」 등은 청사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출입자 등의 흥기나 위험한 물건²¹⁾ 소지 여부에 대해 검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18)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19) 「국회법」 제153조(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① 흥기를 지닌 사람, 술기운이 있는 사람,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필요할 때에는 경위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0) 「법원조직법」 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③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흥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

21) 위험한 물건은 흥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고,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 따라서, 보호관찰소 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 출입자들의 흉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여부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2조의 취지와 다른 법률의 예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률이 소년 보호관찰사건의 경우 13.2%, 성인 보호관찰사건은 4.3%²²⁾인 만큼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에 대한 사전예방적 측면²³⁾에서 이들의 보호관찰소 출입시 흉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여부에 대한 검색에 관한 근거를 규정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형법」에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²⁴⁾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도 개정안은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실제로 이들에 대한 제재 등 실효적인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 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해석하고 있음[헌재 2015. 9. 24. 선고 2015헌가17]

22) 2023년 소년 보호관찰사건의 기간 중 재범률은 13.2%로 전년 대비 1.2%p 상승하였고, 성인보호관찰사건의 기간 중 재범률은 4.3%p로 전년 대비 0.2%p 상승함.
법무부, 「2024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2024, p.103.~104.

2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6호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으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호도 보호소년들에게 흉기 등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음.

24)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책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사입법²⁵⁾과 같이 이들의 출입 금지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체계자구적 검토사항으로, 개정안은 검색의 주체를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검색을 하는 주체는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므로 실제 검색의 행위주체로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해 관련기관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대한변호사협회는 타법의 규정에서 검색의무의 주체를 실제 검색을 실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보호관찰소의 경우에도 보호관찰소의 장이 아니라 실제 검색을 실시하는 자를 그 주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65

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금지물품)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녀서는 아니 된다.

1. 마약·총기·도검·폭발물·흉기·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제93조(신체검사 등) ③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자가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고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참고자료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지소 현황

□ 현황 개요

- 전국 58개 보호관찰소
- 자체 청사 : 35개 {합동 청사 4개(춘천, 홍성, 대구서부, 제주) 포함}
- 임차 청사 : 23개
- 보안검색대 설치 : 14개 기관(모두 설치 2개, 출입통제게이트 8개, 문형금속탐지기 4개)
- 직원수 : 보호직 외 공무원, 운전직 등 포함
- 보호관찰 현재원 : 76,197건(보호관찰, 전자감독, 사회봉사, 수강, 조사 등)

□ 보호관찰소 현황(2025. 3.기준)

구분	시설 소재지	자체/ 임차	보안검색대 설치 여부			직원수 (현원)	보호관찰 현재원
			출입통제 게이트	문형금속 탐지기	X-ray 탐지기		
서울보호관찰소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272	자체	○	○	○	103	3,330
서울동부 보호관찰소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	자체				48	1,776
서울남부 보호관찰소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93 양천빌딩	자체		○		78	2,409
서울북부 보호관찰소	서울 강북구 덕릉로 78	자체		○		48	1,629
서울서부 보호관찰소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217 아현빌딩 3~7층	임차				38	1,315
속초지소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반로 189, 2층	자체				11	320
영월지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0 수정빌딩 2~3층	임차				7	155
대전보호관찰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82	자체	○			76	2,575

구분	시설 소재지	자체/ 임차	보안검색대 설치 여부			직원수 (현원)	보호관찰 현재원
			출입통제 게이트	문형금속 탐지기	X-ray 탐지기		
홍성지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45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1층	자체 (합동)				15	475
공주지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114 공주클리닉 6층	임차				8	238
논산지소	충남 논산시 시민로294번길 27 중앙타운 2층	임차				11	433
서산지소	충남 서산시 서령로 89 일원프라자 2-3층	임차				17	714
천안지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44	자체	○	○	○	49	2,367
청주보호관찰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 99	자체				53	1,542
충주지소	충북 충주시 변영대로 245	임차				17	577
제천지소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212 옥란빌딩 3층	임차				9	260
영동지소	충북 영동군 영동항간로 56 향군회관 2층	임차				7	116
대구보호관찰소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49길 17	자체	○			78	3,216
대구서부지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2층	자체 (합동)				52	1,602
안동지소	경북 안동시 강남14길 41	자체				13	532
경주지소	경북 경주시 소금강로 39 동원빌딩 4층	임차				12	391

구분	시설 소재지	자체/ 임차	보안검색대 설치 여부			직원수 (현원)	보호관찰 현재원
			출입통제 게이트	문형금속 탐지기	X-ray 탐지기		
포항지소	경북 포항시 북구 해안로 481	자체				25	1,156
구미지소	경북 구미시 봉곡로11길 13	자체				26	876
상주지소	경북 상주시 삼백로 151 2층	임차				9	211
영덕지소	경북 영덕군 영덕읍 읍사무소길 26	임차				9	178
부산보호관찰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 89번길 11	자체	○			65	1,967
부산동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예전로 103	자체				44	1,692
부산서부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10 화인빌딩 7층, 10~11층	임차				42	1,528
울산보호관찰소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02번길 3-12	자체	○			72	2,160
창원보호관찰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 32	자체	○			68	2,502
진주지소	경남 진주시 소호로 86	자체				32	938
통영지소	경남 통영시 여항로 403-8 재향군인회관 2-4층	임차				22	1,152
밀양지소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1856 제일빌딩 4층	임차				10	225
거창지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22-1 1001빌딩 2층	임차				7	196

구분	시설 소재지	자체/ 임차	보안검색대 설치 여부			직원수 (헌원)	보호관찰 현재원
			출입통제 게이트	문형금속 탐지기	X-ray 탐지기		
광주보호관찰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75	자체	○			80	3,021
목포지소	전남 목포시 석현마을길 25	자체				24	778
순천지소	전남 순천시 강남로 56	자체				39	1,473
해남지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54-3(1층, 3층)	임차				11	370
전주보호관찰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9	자체		○		51	1,431
군산지소	전북 군산시 번영로 292	자체				30	1,152
정읍지소	전북 정읍시 중앙1길 149	자체				15	353
남원지소	전북 남원시 요천로 1391	자체				9	212
제주보호관찰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자체 (합동)				37	1,224